

KWDI

해외통신

2022년 1·2월 합본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미국 UNITED STATES



직장 내 젠더폭력 현실과 법제도 현황

김춘례 세인트조셉 대학교(Saint Joseph's University) 조교수

- 최근 미국에서는 주목할만한 일이 있다.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직장 내 법률적 변화라고 일컬어지는 “성폭력 및 괴롭힘 사건의 중재 조항 종결” 법률(the Ending Forced Arbitration of Sexual Assault and Sexual Harassment Act)이 2022년 2월 의회를 통과해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 법률은 피해자 개인이 법정을 갈 것인지 아니면 중재위원회를 거쳐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으로 피해자가 고용주에 대해 소송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 법률을 소개한 길리블랜드(Gillibrand) 상원 의원은 이 법을 통해 고용주 및 기업들이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NPR, 2022). 또한 그는 이 법을 통해 “가해자에게 주어졌던 제도적 보호가 사라질 것”이라 밝혔다(Washington Post, 2021). 이 법률에 따른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 국제인권감시기구 휴먼라이트워치(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직장 내 젠더폭력 피해율이 남성보다 불균형적으로 높다고 한다. 미국노동통계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2019년 살인을 제외한 41,560건의 직장 내 폭력이 발생했고 직장 내 폭력 피해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63.5%이었다(BLS, 2019). 또한 전국 피해자 조사(National Crime Victimization Report)에 따르면 직장 내 폭력 중 강간이나 성폭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4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NCVS, 2011).
- 직장 내 젠더폭력 피해자들은 수사 과정 중에서 경찰, 변호사, 혹은 판사 등에게 2차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알려졌을 경우 자발적이거나 비자발적이든 간에 직장 동료, 가족, 친구 혹은 주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시선 및 차별을 경험한다.

참고자료

- Aflico(2017.03.13.). “Ending Gender Based Violence in the World of Work in the USA”.
<https://aflicio.org/sites/default/files/2017-04/Ending%20Gender%20Based%20Violence%20in%20the%20World%20of%20Work%20USA%20Report%20%28002%29.pdf>
(접속일: 2022.02.14).
- NPR(2022,02.10.), “Congress approves bill to end forced arbitration in sexual assault cases”,
<https://www.npr.org/2022/02/10/1079843645/congress-approves-bill-to-end-forced-arbitration-in-sexual-assault-cases>
(접속일: 2022.02.14).
- The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2011.03.). “Workplace violence 1993-2009”,
<https://bjs.ojp.gov/content/pub/pdf/wv09.pdf>
(접속일: 2022.02.14).

2차 피해를 가하는 방식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 피해자를 피하거나, 피해자의 고통을 축소시키거나, 피해자를 탓하거나 혹은 피해자를 깎아내리는 방식이다. 또한 가해자로부터의 양갈음을 받는 형식의 2차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 2차 피해는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 개인 특성 및 피해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피해자가 겪는 (어떤 경우는 처음 폭력 피해보다 더 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하겠다(Carrera-Fernández 외, 2021).

이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법들이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제정되고 실행되고 있지만, 여성의 직장 내 폭력 피해는 여전히 자주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피해자는 형사법 및 민법 아래 보호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는 데 있어 양한 장애물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연방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조건(예: 작업장의 최소 고용인 수, 민원 제기 가능 기간, 고용주에게 피해 사실 고지의무 등)에 맞지 않으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또한, 2018년의 대법원이 기업이 고용인에게 개인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에 손을 들어주면서 많은 고용인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Washington Post, 2021).

한편에서는 연방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장애물들로 인해 직장 내 폭력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State) 차원에서의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에 따라 미국 내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뉴욕 그리고 오레곤 같은 몇 개의 주에서는 주법(state legislation)을 통해 여성의 직장내 폭력 피해 및 2차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리노이(Illinois)주는 성폭력 피해자나 고용인의 가족이 성폭력 피해자일 경우 그들에 대한 어떠한 직장 내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고용주는 작업 일정을 바꾸거나 사무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피해자에게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줘야 한다. 오리건주도 비슷하게 고용주는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고용주가 실행하기에 사업의 운영이 어렵거나 손실이 너무 큰 경우를 제외하고 적절한 안전 편의를 제공해야만 한다. 최근 캘리포니아(California)주에서는 직장 내 감독자의 성폭력 예방 교육 및 훈련, 고용인의 권리에 대한 정보 제공, 피해자를 위한 자원 제공, 핫라인 정보 제공 등을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이렇게 주에서 실행되는 법의 경우는 연방법이 제한해놓은 작업장의 최소 고용인 수 같은 조건을 따르지 않아도 되고 각자 사업장별 다양한 법률을 제정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 내 폭력을 예방할 뿐 아니라 2차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AFL-CIO, 2017).

위에서 언급된 캘리포니아주의 사례처럼 직장 내 성폭력 의무 교육과 같은 정책을 기업들이 앞장서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의무 교육이 얼마나 젠더폭력 및 그에 따른 2차 피해를 줄이는데 관한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 The Washington Post (2022.02.13.), "Opinion: Distinguished pol of the week: A major civil rights win",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2022/02/13/gillibrand-sexual-harassment-arbitration-ban-a-big-win/> (접속일: 2022.02.14.).

-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2021.08.06). "Homicides and other workplace assaults by gender in 2019", <https://www.bls.gov/opub/ted/2021/homicides-and-other-workplace-assaults-by-gender-in-2019.htm> (접속일: 2022.02.12.).

- Carrera-Fernández, M. V., Almeida, A., Cid-Fernández, X. M., González-Fernández, A., Fernández-Simo, J. D.(2021). Troubling Secondary Victimization of Bullying Victims: The Role of Gender and Ethnicity.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13.

- Rhode D(2019) #MeToo: Why Now? What Next? *Duke Law Journal*, 69, 377-428. <https://www.hsdl.org/?view&did=821878>

또한 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젠더폭력 및 그에 따른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과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사회 인식변화는 짧은 시간에 이를 수 있는 성과는 아니지만, 현재 미국내 전반적인 사회분위기도 젠더 피해 감소에 일조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여성의 정치적 영향력도 커지고 있고 미투운동(MeToo movement) 이후로 많은 젠더폭력 피해 여성이 문제의 심각성을 자기 경험을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알리기 시작하면서 제도적 변화를 일으키고 그 변화가 사회적 관습으로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평가되고 있다(Rhode, 2019).

영국 UNITED KINGDOM



가정폭력법 제정 및 시행 현황

박서희 로테르담에라스무스대학교(Erasmus University Rotterdam) 박사과정

2021년 하반기, 영국에서는 가정폭력법(Domestic Abuse Act)이 제정되었다.¹⁾ 본 법의 조항 중에서는 영국 전체가 아니라 잉글랜드(England)와 웨일즈(Wales)에만 한정되는 조항들도 있으나, 가정폭력이라는 행위를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이 법은 폭력적인 행위가 성적, 신체적 폭력 및 폭력을 가하겠다는 협박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언행, 자금이나 재산을 빼앗아 경제적 권한을 박탈하는 행위, 또는 다른 어떤 형태로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억압적인 행위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보복하기 위해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나 그렇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리벤지 포르노), 신체적으로 치명적인 상해를 입히지 않았어도 목을 조르거나 질식시키는 행위 역시 범죄로 규정하였다.

또한 실질적인 가해자 처리 및 피해자 지원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잉글랜드 내 지역 당국은 가정폭력 피해자 및 그 자녀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안전한 거주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 당국은 피해자가 세입자인 경우 임대인-임차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갈 곳이 없는 상황이면 우선적으로 거주공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일반가정의(General Practitioner, GP)²⁾에서는 피해자가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 필요한 문서 발급을 요청했을 때 피해자에게 수수료와 같은 일종의 금전적인 비용을 부과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가해자는 구치상태에서 풀려나는 경우 그 조건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잉글랜드, 웨일즈 내 민사법원과 가정법원에서는 가해자가 반대신문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법정에서 마주하여 피해자가 입었던 심리적 위협이나 고통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2021.11.22.), "Policy paper-Domestic Abuse Act 2021: overarching factsheet",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domestic-abuse-bill-2020-factsheets/domestic-abuse-bill-2020-overarching-factsheet> (접속일: 2022.1.15).
- The Guardian(2021.11.07.) "Launch of campaign to tackle violence against women delayed,"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1/nov/07/launch-of-campaign-to-tackle-violence-against-women-delayed> (접속일: 2022.01.16).
- The Guardian(2021.11.19.) "The law is failing domestic abuse victims in England and Wales. But we can change it,"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21/nov/19/law-uk-domestic-abuse-victims-assaults-justice> (접속일: 2022.01.16).

-
- 1) 이 법은 폭력, 학대, 위협 등의 행위를 포괄하는 의미로 'domestic abuse'라고 명시하나 본 원고에서는 가독성을 위해 간략하게 '가정폭력'이라고 칭함.
 - 2) 영국 및 여러 유럽국가에서 개인은 보통 거주지 근처에 있는 일반가정의(GP)에 등록해두고, 필요한 경우 일반가정의를 만나 1차 진료를 받음. 대개 일반가정의를 소견서를 받아야만 전문의나 종합병원 진료가 가능하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법이 제정된 배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8년 상반기, 정부는 가정폭력 대응 변화(Transforming the Response to Domestic Abuse)를 주제로 공개 정책협의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3,200여건 이상의 의견을 접수하였다. 이후 2019년 1월, 정부의 공개 협의에 대한 답변 및 가정폭력법 초안을 발표했고, 정부는 123개의 가정폭력 대응 추진 방향 및 피해자 지원 계획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2019년 법안(the Domestic Abuse Bill 2017-2019), 이어 2020년 법안(the Domestic Abuse Bill 2019-2021) 단계를 거쳐 2021년 왕실의 최종 인가를 받고 법률로 제정되었다.

📌 영국 정부는 2020년 3월 말 기준 16-74세 성인 약 230만 명이 지난 1년간 가정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여성 160만 명, 남성 76만 명). 그리고 경찰에 접수된 각종 범죄 신고 평균 10건 중 1건 이상이 가정폭력에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 가정폭력 발생률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제도적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 노동당(Labour Party) 소속 이벳 쿠퍼(Yvette Cooper) 의원은 가디언(The Guardian)지 기고를 통해 이번 법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기도 했다. 법에서 명시한 여성과 여아대상 폭력 대응체계 및 절차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쿠퍼 의원은 기존 법 개정을 2021년 초 제안한 바 있다. 그녀는 현 법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피해입은 피해자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 개정 제안 당시 6개월로 사건 접수 유효기간을 철폐하여 피해자에게 결심하고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 지난 5년여간 잉글랜드와 웨일스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 약 13,000여 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그 이유가 일반 폭행 사건 기소에 6개월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쿠퍼 의원은 이러한 기간 제한이 술집에서 일어난 폭행 시비나 길거리에서 발생한 추행 등의 일회성 사건에는 적절할 수 있겠으나 가정폭력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데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수없이 많고 다양한데, 가해자가 계속 학대하고 있거나, 가해자에게서 벗어나는 게 정신적으로 어렵거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경우, 피해자가 부끄럽게 여겨서 꺼리는 경우, 돈이나 갈 곳이 없어 도망치지 못하는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등이 있다. 또한 쿠퍼 의원은 심각한 신체 상해의 경우 가해자가 기소되지만, 현장 경찰들로부터 수많은 가정폭력 사건이 법적으로 일정 수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일반적인 폭행 수준으로 격하된다고 들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법적 기반 마련 이외에도 영국 정부는 좀 더 실질적으로 대중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차원에서 여성 및 여아 대상폭력 근절 캠페인을 기획하기도 했다. 2021년 7월, 영국 내무부에서는 여성 및 여아 대상 폭력 철폐 전략을 발표했다. 해당 전략은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도움요청을 장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가 폭력 가해자를 타겟으로 가정폭력은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캠페인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21년 연말 가디언(The Guardian) 측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본 캠페인을 2022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전략을 발표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캠페인의 전반적인 내용이 원론적이고 개념적인 수준에 머물러있어 올해 실제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스토킹 관련 피해자 지원 및 인식 제고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영국의 비영리재단 ‘Suzy Lamplugh Trust’에서 정책 및 캠페인을 담당하고 있는 사스키아 가너(Saskia Garner)는 이에 대해 실행이 중요하지만 캠페인 메시지가 정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를 들어 같은 캠페인 메시지여도 스톱킹 가해자와 다른 유형의 폭력 가해자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무부 대변인은 정부가 늦어도 2022년 3월 말까지는 본 캠페인 이행에 착수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성단체, 학계, 피해자 지원 분야 관계자 등에게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가해자는 가해 행위를 멈추고 피해자는 본인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캠페인 메시지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가정폭력법이 본격적으로 이행되고 인식제고 캠페인이 실시되면 영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하다.

영국 UNITED KINGDOM



영국의 가정폭력·성범죄 증인 보호 관련 제도 현황

박서희 로테르담에라스무스대학교(Erasmus University Rotterdam) 박사과정

2021년 12월, 한국 헌법재판소는 19세 미만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정 진술 대신 녹화 영상의 법적 증거능력을 인정했던 기존 조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0조 제6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나아가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와 같은 결정이 발표된 후, 일각에서는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의 법정 출석과 반대신문, 증언 절차 전반에서 피해자가 입게 될 수 있는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위와 같은 한국의 최근 사건을 계기로, 본 원고에서는 영국의 가정폭력 및 성범죄 피해자 증언이나 반대신문 절차에서 증인을 최대한 배려하는 제도적 특징을 개괄하고자 한다. 비단 미성년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 피해자 전반에 관한 내용도 필요한 경우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2021년 하반기, 영국에서는 가정폭력법(Domestic Abuse Act)이 제정되었는데, 같은 법에서는 잉글랜드, 웨일즈 내 민사법원과 가정법원에서 가해자 측의 직접적인 피해자 반대신문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³⁾

참고자료

- Crown Prosecution Service, "Safeguarding Children as Victims and Witnesses", <https://www.cps.gov.uk/legal-guidance/safeguarding-children-victims-and-witnesses> (접속일: 2022.2.23).
- Crown Prosecution Service, "Special Measures", <https://www.cps.gov.uk/legal-guidance/special-measures> (접속일: 2022.2.23).

3) 본 법은 폭력, 학대, 위협 등의 행위를 포괄하는 의미로 'domestic abuse'라고 명시하나 본 원고에서는 가독성을 위해 간략하게 '가정폭력'이라고 칭함. 본 법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동향 2022년 1월 원고 참고바람.

그동안 영국의 가정법원 심리 절차에서 법원이 가정폭력 용의자나 가해자 측이 직접 피해자를 신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는 부재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서 상당한 고통을 겪는다는 비판이 일었고, 가해자를 대면한다는 환경에서 피해자의 증언의 전반적인 질적 하락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2020년 6월, 영국 사법부(Ministry of Justice)는 관련분야 전문가 패널을 조직하였으며, 그동안 제출된 증언 관련 데이터와 1,200여 시민 및 단체가 제출한 내용들을 반영하여 사법적 신문 절차에서 아동이 연루된 경우 이행해야 할 제도적 제언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정부는 보고서와 함께 이행전략(Implementation Plan)을 발표했는데, 본 이행전략에서 수립된 내용들이 가정폭력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반대신문 금지 조항(제63, 64, 66절)에 반영되었다.

작년에 제정된 영국의 가정폭력법에 따르면 용의자 및 가해자 측은 가정법원 기소 절차 과정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반대신문 할 수 없다. 본 법에서는 가정법원에서는 필요한 경우 법원 측에서 공인된 법적 대리인을 지정하고, 일부 제한된 상황에서만 반대신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영국 정부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위와 같은 피해자 반대신문 금지 조항은 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대면하여 반대신문을 당하거나 본인이 질문해야 하는 상황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목적이라고 명시했다.

그렇다면 다른 범죄 피해자, 특히 미성년자 아동이나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이들은 사법 절차가 진행되면서 어떤 제도적 보호를 받으면서 증언 및 신문에 참여하는가? 영국 검찰(Crown Prosecution Service, CPS)에서는 검찰에서 사법 절차에서 피해자 및 목격자 아동 보호 지침(Safeguarding Children as Victims and Witnesses)을 공표하고 시행하고 있다. 본 지침은 증언, 법정 방문, 재판 시 대기시간 및 연기, 언론 또는 대중매체의 노출 등 세부적으로 검찰 측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본 지침에서는 아동을 단순히 나이로만 증언 또는 반대신문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각 아동은 개인으로 인정받고 개인별 성숙도나 역량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법정에 섰을 때 위축되는 분위기를 제공하지 않도록 판사, 변호인 등이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다루는 특별 조치(Special Measures)도 마련되어 있다.

특별 조치는 1999년 제정된 청소년 사법 및 형법 증거법(Youth Justice and Criminal Evidence Act)에서 법적 절차를 겪으면서 심신이 취약하거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증인에게서 증언을 받는 과정에서 보다 나은 증언을 취합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매우 다양한 세부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통합적으로 특별 조치라는 지침으로 칭하고 있다. 이 범주에 해당하는 증인은 여러 부류가 있는데, 18세 이하 모든 미성년 아동(기존 17세에서 2009년 18세로 조정됨)은 본 특별 조치에서 정의하는 취약하거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대상으로 포함된다. 그리고 성범죄 피해의 경우, 증인이 성인이거나 본인이 원치 않더라도 자동으로 무조건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증인'으로 분류되고 특별조치 대상에 해당 된다.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2022.01.31.), "Policy paper: Cross-examination in family proceedings factsheet",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domestic-abuse-bill-2020-factsheets/cross-examination-in-the-family-court-factsheet> (접속일: 2022.2.23).

- 📌 특별조치에서 증인을 위해 배려할 수 있는 법정 내 조치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피고와 증인을 분리하기 위해 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다.
 - 증인은 법정 밖 다른 공간에서 증언하고, 법정 내에서는 실시간 방송 링크로 연결할 수 있다. 증언은 법정과 같은 건물 내 공간일 수도 있고, 다른 장소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
 - 성범죄 사건이거나 피고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경우, 공개가 아닌 비공개 법정으로 진행할 수 있다.
 - 판사 및 변호인은 영국 법정에서 착용하는 가발 및 법복을 벗고 재판을 진행한다.
 - 재판 심리 전 증인이 증언하는 영상을 녹화할 수 있으며, 이는 사법적 이해관계와 충돌하거나 원고의 증언을 질적으로 높일 수 있다면 사전 신청 시 자동으로 허용된다. 또한 증인 반대신문 및 재산문 역시 사전 진행이 허용될 수 있다.
- 📌 지난 한국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앞으로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고 반대신문 절차를 마주해야 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현 시점에서 영국의 가정폭력 또는 성범죄 피해자, 특히 아동·청소년을 특별 대상으로 고려하고 법적 절차에서 보호하고자 마련한 제도적 틀은 시사 하는 바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영국 UNITED KINGDOM



아동성범죄 방지위한 전략 수립 및 대응 현황

임 다혜 런던위생·열대의학대학원(London School of Hygiene & Tropical Medicine) 국제보건/보건정책학 박사과정

-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국립학회’(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에 의하면 2019년 기준 하루에 200건 이상의 아동성범죄 사건이 경찰 당국에 접수된다. 2019년과 2020년에는 강간, 온라인 그루밍, 그리고 성추행 등을 포함한 아동성범죄 사건이 총 73,518건 접수되었고, 이는 5년 전에 비해 57% 증가한 수치이다. 피해 아동 중에서 8,000건은 14세 청소년으로, 미성년자 중에서 가장 피해가 많은 연령이다. 12,374건의 성범죄는 10세 이하 아동이 피해자였으며, 449건은 1세 이하 아동이다.
- 📌 아동성범죄 접수기록보다 이 사례들이 실제 기소로 이어지는 사례는 매우 적다. 2020년 3월 말 기준으로 5,116건의 아동성추행 사건이 기소되었고, 3,135건의 아동 음란물유포 사건이 기소되었다. 아동성범죄 사건이 기소로 이어지기 어려운 점으로 경찰이 피해를 호소한 아동에게 피해 책임이 ‘문란한’ 본인에게 있으며, 증거불충분으로 기소가 어렵다고 2차 가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지적된다.

참고자료

- NSPCC(2020.08.10.), “Child sexual offences jump 57% in 5 years”, <https://www.nspcc.org.uk/about-us/news-opinion/2020/child-sexual-offences-rise/> (접속일: 2022.02.20).
- Mirror(2022.02.01.), “Police blamed child rape victims for their OWN sex abuse, damning report finds”, <https://www.mirror.co.uk/news/uk-news/police-downplay-scale-child-sex-26106368> (접속일: 2022.02.23).

이처럼, 아동성범죄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바탕으로 영국 정부는 2019년 6월,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안전한가’(How Safe Are Our Children) 컨퍼런스에서 ‘아동 성범죄대응 전략’(Tackling Child Sexual Abuse Strategy)을 발표할 것을 약속했다. 본문에서는 영국 정부가 2021년에 발표한 아동 성범죄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아동성범죄 예방, 가해자 처벌 그리고 재판과정과 이후의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영국 정부의 대응책을 살펴본다. 또한, 성범죄 피해 아동의 재판 절차지원과 범죄 이후의 전인적 지원을 위해 정부 부처와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시범운영 하는 ‘등대센터’(The Lighthouse)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 성범죄대응 전략 (Tackling Child Sexual Abuse Strategy)

영국 정부는 모든 형태의 아동성범죄를 예방하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 성범죄대응 전략’을 2021년에 발표했다. 아동성범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 가해 사실을 밝혀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경찰의 범죄기록과 관할구역의 사회 보호 아동에 대한 독립적 감사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인력과 재원을 확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가해자를 기소하고, 아동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판결을 엄격히 시행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본 전략보고서는 아동성범죄 피해자 또는 생존자에 대한 지원의 지속성과 질 개선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영국 정부에서 발표한 아동 성범죄대응 전략의 목적은 세 가지다.

첫째, 모든 형태의 아동성범죄에 대응하고, 가해자를 기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영국 내무부(Home Office)는 법을 강화하고, 정보기관과 해당 부처들의 협력을 통해 아동성범죄가 기소와 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영국 내무부는 2만 명의 경찰 인력과 1만 개의 감옥 수감 실 확충, 그리고 영국 국립기소청(Crown Prosecution Service)에 8,500만 파운드(약 1,37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추가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 아동 범죄 이미지 데이터베이스(Child Abuse Image Database)와 같은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범죄접수에서 기소까지의 과정이 어려운 점이 경찰과 검찰의 아동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태도가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토대로, 내무부는 이들에 대한 교육과 지침서를 제작할 것이다.

둘째, 아동성범죄와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영국 내무부는 근거에 기반한 교육 캠페인을 통해 아동성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한다. 아동성범죄 가해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의 구금 기간을 연장하고, 출소 이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와 관련 부처들은 아동성범죄자 관리와 이들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할 것이다.

셋째,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모든 피해자와 생존자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 보호자들에게 아동성범죄와 대응에 대해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질과 효과를 향상할 것이다. 그리고 ‘온라인 피해 프레임워크’(Online Harms Framework)의 시행을 통해 아동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기업에 의무화할 것이다. 아동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연령과 상관없이 재판과정을 전면지원하고,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취약한 피해자(vulnerable victims)를 위한 특별 절차를 확대할 것이다. 아동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 Mirror(2022.02.01.), “Police blamed child rape victims for their OWN sex abuse, damning report finds”, <https://www.mirror.co.uk/news/uk-news/police-downplay-scale-child-sex-26106368> (접속일: 2022.02.23).
- GOV.UK(2021.01.22.), “Tackling Child Sexual Abuse Strategy”,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ackling-child-sexual-abuse-strategy> (접속일: 2022.02.20).
- CPS.GOV.UK(2021.01.), “Live Links”, <https://www.cps.gov.uk/legal-guidance/live-links> (접속일: 2022.02.26).
- GOV.UK(2019.01.25.), “Ministry of Justice Witness Intermediary Scheme”, <https://www.gov.uk/guidance/ministry-of-justice-witness-intermediary-scheme> (접속일: 2022.02.26).
- GOV.UK(2021.09.06.), “Child Sexual Abuse: Child House”,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hild-sexual-abuse-child-house> (접속일: 2022.02.24).
- The Lighthouse, URL: <https://www.thelighthouse-london.org.uk/> (접속일: 2022.02.26).

재판에 동석하면 가해자와의 위력 관계 또는 언어구사력의 한계에 의해 정확한 증언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재판에 동석하여 증언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 위험이 커진다. 때문에, 내무부는 2020년에 ‘취약한 증인’(vulnerable witnesses)이 재판 전에 ‘시각적으로 기록된 증언’(Visually Recorded Interviews)를 녹화하거나, 승인된 외부공간에서 ‘실시간 재판 링크’(Live Court Link)를 통해 증언하거나, 법무부에 의해 등록된 중개인(Registered Intermediaries)의 도움을 통한 증언하는 것이 재판에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법을 확대했다.

아동성범죄 피해 아동 재판과정과 성범죄피해 이후의 지원을 위한 ‘등대센터’ (The Lighthouse)

🔦 ‘등대센터’(The Lighthouse)는 아동성범죄 피해 아동의 의료, 사회적 지원, 심리치료, 형사재판지원 등의 전면적 지원을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영국 내무부, 영국 국립 의료제도(National Health System England),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그리고 경찰 및 범죄 시장실(Mayor’s Office for Policing and Crime)의 지원으로 바닛구(Barnet), 캠덴구(Camden), 엔필드구 (Enfield), 헤링에이구(Heringey), 그리고 이즐링턴구(Islington)에서 2022년 3월까지 시범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등대센터는 아이슬란드에서 1998년에 시행된 ‘Child House’(아동의 집)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다. 아동의집은 아동에게 필요한 수요를 전인적으로 조사하고, 아동과 그들의 부모 및 보호자에게 의료 및 사회적 지원, 심리치료, 법적 지원을 여러 부처에서 협력하여 제공하는 아동 친화적 센터이다. 아동의 집 모델은 유럽의 여러 국가와 미국에서도 차용하여 시행하고 있는 센터이다. 영국에서는 2015년 영국 국립 의료제도에서 성범죄 피해 아동의 전인적 지원에 대한 정책요구를 시작으로, 2016년 영국 아동위원회(Child Commissioner England)에서 구체적으로 북유럽의 아동의 집 모델을 영국에 도입할 것을 촉구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이후 2018년 캠덴구에서 등대센터 시범운영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다섯 개의 구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 등대센터는 성범죄 피해 아동뿐 아니라, 해당 구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에게 성범죄에 대해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교육하고, 성범죄의 대상이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부모와 보호자, 그리고 여러 전문가에게도 아동성범죄 대응과 피해 아동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등대센터에서는 재판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트라우마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상의 증거확보’ (Achieving Best Evidence)를 위해 아동성범죄 내용을 교육받은 정신의학과 의사가 사전녹화 증언과 외부링크를 통한 재판 증언을 수행한다. 또한, 센터에 소속된 경찰인력이 시범운영되는 구의 법률기관과 관련 서비스 제공자들에 자문을 제공하고 협력한다.

🔦 등대센터의 시범운영이 2022년 3월에 종료되면, 영국 내무부에서는 아동성범죄 피해자와 생존자를 지원하기 위해 아동의 집 모델을 도입하고자 하는 지방 자치위원회와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지침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종료 이후 정부와 지방정부 예산이 등대센터 또는 유사한 센터 확충을 위해 확보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